

#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021-42
----------	---------

제안연월일: 2021년 4월 20일

제안자: 미래복지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21-26호)을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미래복지위원회(2021.4.20.)에서 상정하여 심도 깊게 심사한 결과, 상정된 개정조례안 외의 부분에서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 코로나19 방역대책인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긴급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시·구협력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발전에 필요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속 운영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변경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 개정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변경(안 제2조의2)

나. 금융기관의 저금리 용자에 대한 이차차액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함(안 제4조)

다. 기금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문 정비(안 제6조)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정비(안 제5조, 안 제6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나. 협조부서: 지역경제과

다. 기 타: 산·구조문 대비표 등

##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본문 중 “2021년 6월 30일”을 “2026년 6월 30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융기관의 저금리 용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

제5조제4항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을 “「은행법」 제2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담당국장, 담당과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3.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4. 그 밖에 위촉직 위원은 중소기업체, 금융기관 및 기금 운용과 관련이 깊은 분야의 대표 또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 안)
<p>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1년 6월 30일까지</u>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u>2026년 6월 30일</u>----- ----- ----- ----- ----- -----</p>
<p>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1. ~ 3.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4조(기금의 용도) ①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금융기관의 저금리 용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u></p>
<p>② (생 략)</p>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③ (생 략)</p> <p>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p> <p>⑤ (생 략)</p>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은행법」 제2조제1항----- ----- -----</p> <p>⑤ (현행과 같음)</p>
<p>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서구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 ----- ----- ----- ----- ----- -----</p>

1. 2. (생략)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미  
래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경  
제과장, 기획예산과장을 당연직으  
로 하며, 구 의원과 중소기업체, 금  
융기관 및 기금 운용과 관련이 깊  
은 분야의 대표 또는 전문가 중에  
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⑥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  
필요-----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  
원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담당국  
장, 담당과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3.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인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4. 그 밖에 위촉직 위원은 중소기  
업체, 금융기관 및 기금 운용과  
관련이 깊은 분야의 대표 또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